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78호

2018. 9. 10.

건 명	논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원스톱허가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2018년 조례 규제개선 50선 자율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 및 「건축법」 이 개정(2017.1.17.)됨에 따라 미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불명확한 용어에 대한 명확화(안 제22조제3항제4호)
- 나.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사항 신설(안 제22조 제3항제13호)
- 다.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완화(안 제24조제4항)
- 라. 상위법에 맞게 주택의 유지·관리 지원 사항 신설(안 제26조의2)
- 마.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 삭제(안 제29조제3항)

□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건축법시행령」제15조(가설건축물), 제20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, 제27조의2(공개 공지 등의 확보)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